

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 안 번 호	286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8. 1. 11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지역 중소·벤처기업들에게 매출의 탑 수상기회를 확대하여 매출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외거주자에 대한 포괄적인 포상수여 근거를 명시함(안 제2조).
- 나. 매출의 탑 수상부문을 확대하여 정함(안 제22조의3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의사항 : 해당없음
- 라. 기타
 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 - (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 - (3) 입법예고 : 2007. 12. 21. ~ 12. 31. / 접수의견 없음

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.

제22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매출의 탑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매출액이 1백억원대~9백억원대의 경우 각 1백억원 단위 매출의 탑
2. 매출액이 1천억원대~9천억원대의 경우 각 1천억원 단위 매출의 탑
3. 매출액이 1조원대~3조원대의 경우 각 1조원 단위 매출의 탑

제24조제10호 및 제42조제2항중 “1천억원”을 각각 “1백억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관련 법규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서

2008년 1월 24일

행정자치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년 1월 11일 대전광역시장
2. 회부일자 : 2008년 1월 14일
3. 상정일자 : 제171회 대전광역시의회(임시회)
제2차 행정자치위원회(2008. 1. 24)
상정, 심사, 원안가결

II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낙현)

1. 제안이유

지역 중소·벤처기업들에게 매출의 탑 수상기회를 확대하여 매출의
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외거주자에 대한 포괄적인 포상수여 근거를 명시함(안 제2조).
- 나. 매출의 탑 수상부문을 확대하여 정함(안 제22조의3).

III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박춘용)

○ 본 조례 안은

기업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정규모 이상 매출실적을 달성한 기업에게 포상하는 매출의 탑 수상부문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다만, 수상부문을 기존 5개 부문에서 21개 부문으로 세분하여 확대하는 것은 포상 대상 기업이 작년 말 현재 총 99개 기업에 달하므로 포상의 희소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.

IV. 토론요지 : 생략

V. 질의답변요지 : 생략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